

##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

### 양 당사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공정 및 처리의 취급

1. 이 부속서에 포함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때,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로 수출되고 이후 대한민국으로 재수입된 재료에 대해 그곳에서 수행된 공정 및 처리는 대한민국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. 다만,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<sup>1)</sup>는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2.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이 장과 제4장(원산지 절차)은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부속서에 포함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적용된다. 이에 따라, 상품이 제3.1조부터 제3.14조까지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.

### 원산지 절차

3. 상품이 제1항에 근거하여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고 신고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서에 그러한 사항을 언급한다.
4. 제4.8조(검증)에 따라, 각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이 부속서에 포함된 상품의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.

### 검토

5.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부속서에 포함된 상품 목록의 개정 또는 수정을 요청한 때에는,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협의

---

1) 이 부속서의 목적상, “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”란 수송비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 및 누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,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. 어느 한 쪽 당사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이미 획득한 비원산지 재료는 비원산지 투입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.

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.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고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 양 당사국이 상품 목록을 개정 또는 수정하기로 합의한 경우,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 목록을 개정하는 공동 결정을 내릴 수 있다.

6.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에 대해 검토한다. 각 당사국은 그러한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,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서 이 부속서를 개정 또는 수정하는 공동 결정을 내릴 수 있다.

#### 이) 부속서의 적용 정지

7.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부속서에 포함된 원산지 상품이 그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특혜관세대우에 따라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그 국내 산업에 대한 그러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방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그 상품에 대해 이 부속서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.

8. 제7항에 따라 이 부속서의 적용을 정지하려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2개월 전에 통지하며,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안된 정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.

9. 정지 조치를 취한 당사국이 피해의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해 정지가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, 제7항에 언급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.

10. 지역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는, 제7항에 따른 이 부속서의 적용 정지는 제8항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도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. 다만, 통지는 그러한 정지가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.

11. 해당 당사국은 제8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2개월 전에 통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제안된 정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 부속서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. 이러한 경우, 그 당사국은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증명하거나,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, 정지의 기간 또는 빈도를 제한하거나, 또는 자국의 조치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.

#### 폐기 선택

12. 이 협정의 발효 다음 날부터 5년 후, 당사국은 검토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재량으로 이 부속서의 적용 결과로 자국의 이익이 손상을 입었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 부속서의 적용을 폐기할 수 있다.

#### 분쟁해결

13. 어느 당사국도 이 부속서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23장(분쟁해결)을 이용하지 아니한다.

#### 상품 목록

번호	HS 6	품목명
1	320649	유연 또는 염색엑스,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, 염료·안료와 기타 착색제, 페인트와 바니시,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/기타 착색제와 조제품(제3203호·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,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) 및 루미노페로 사용되는 무기물(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/기타 착색제와 조제품/기타/
2	391590	플라스틱과 그 제품/플라스틱의 웨이스트·페어링과 스크랩/기타 플라스틱의 것/
3	392310	플라스틱과 그 제품/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·마개·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/상자·케이스·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
4	392350	플라스틱과 그 제품/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·마개·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/뚜껑·마개·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
5	400599	고무와 그 제품/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(일차제품·판·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)/기타/기타/
6	401699	고무와 그 제품/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(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)/기타

		/기타/
7	410799	원피(모피를 제외한다)와 가죽/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소(버팔로를 포함한다)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(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)(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제4114호의 가죽을 제외한다)/기타(반신의 것을 포함한다)/기타
8	420212	가죽제품 · 마구 · 여행용구 ·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(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)의 제품/트렁크 · 슈트케이스 · 화장품케이스 · 이그재큐티브케이스 · 서류가방 · 학생가방 · 안경케이스 · 쌍안경케이스 · 사진기케이스 · 악기케이스 · 총케이스 · 퀸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, 가죽 · 콤파지션 레더 · 플라스틱의 쉬트 · 방직용 섬유제 · 벌커나이즈드파이버 ·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 ·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 · 화장갑 · 배낭 · 핸드백 · 쇼핑백 · 돈주머니 · 지갑 · 지도용 케이스 · 담배케이스 · 담배쌈지 · 공구가방 · 운동용구가방 · 병케이스 ·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· 분갑 · 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/트렁크 · 슈트케이스 · 화장품케이스 · 이그재큐티브 케이스 · 서류가방 · 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/외부표면이 플라스틱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/
9	420219	가죽제품 · 마구 · 여행용구 ·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(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)의 제품/트렁크 · 슈트케이스 · 화장품케이스 · 이그재큐티브케이스 · 서류가방 · 학생가방 · 안경케이스 · 쌍안경케이스 · 사진기케이스 · 악기케이스 · 총케이스 · 퀸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, 가죽 · 콤파지션 레더 · 플라스틱의 쉬트 · 방직용 섬유제 · 벌커나이즈드파이버 ·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 ·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 · 화장갑 · 배낭 · 핸드백 · 쇼핑백 · 돈주머니 · 지갑 · 지도용 케이스 · 담배케이스 · 담배쌈지 · 공구가방 · 운동용구가방 · 병케이스 ·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· 분갑 · 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/트렁크 · 슈트케이스 · 화장품케이스 · 이그재큐티브 케이스 · 서류가방 · 학생가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/기타/
10	420229	가죽제품 · 마구 · 여행용구 ·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(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)의 제품/트렁크 · 슈트케이스 · 화장품케이스 · 이그재큐티브케이스 · 서류가방 · 학생가방 · 안경케이스 · 쌍안경케이스 · 사진기케이스 · 악기케이스 · 총케이스 · 퀸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, 가죽 · 콤파지션 레더 · 플라스틱의 쉬트 · 방직용 섬유제 · 벌커나이즈드파이버 ·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 ·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 · 화장갑 · 배낭 · 핸드백 · 쇼핑백 · 돈주머니 · 지갑 · 지도용 케이스 · 담배케이스 · 담배쌈지 · 공구가방 · 운동용구가방 · 병케이스 ·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· 분갑 · 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/핸드백(멜빵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)/기타/
11	420232	가죽제품 · 마구 · 여행용구 ·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(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)의 제품/트렁크 · 슈트케이스 · 화장품케이스 · 이그재큐티브케이스 · 서류가방 · 학생가방 · 안경케이스 · 쌍안경케이스 · 사진기케이스 · 악기케이스 · 총케이스 · 퀸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, 가죽 · 콤파지션 레더 · 플라스틱의 쉬트 · 방직용 섬유제 · 벌커나이즈드파이버 ·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 · 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 · 화장갑 · 배낭 · 핸드백 · 쇼핑백 · 돈주머니 · 지갑 · 지도용케이스 · 담배케이스 · 담배쌈지 · 공구가방 · 운동용구가방 · 병케이스 ·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· 분갑 · 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/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다니는 물품/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인 것/
12	430211	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/모피(유연처리 또는 완성 가공한 것으로서

		머리부분·꼬리부분·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,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, 제 430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)/전신모피(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, 머리부분 · 꼬리부분 ·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)/밍크의 것
13	430219	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/모피(유연처리 또는 완성 가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·꼬리부분·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,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, 제 430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)/전신모피(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, 머리부분 · 꼬리부분 ·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)/기타/
14	430220	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/모피(유연처리 또는 완성 가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·꼬리부분·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,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, 제 430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)/머리부분 · 꼬리부분 · 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(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/
15	430230	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/모피(유연처리 또는 완성 가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·꼬리부분·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,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, 제 430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)/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(조합한 것에 한한다)
16	430310	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/모피의류 · 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/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/
17	430400	인조모피와 그 제품
18	481620	지와 판지, 제지용 페퍼, 지 또는 판지의 제품/카본지 · 셀프복사지 · 기타의 복사 또는 전사지(제4809호의 것을 제외한다) · 지제의 등사원지 및 오프세트 플레이트(상자에 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/셀프복사지/
19	481940	지와 판지, 제지용 페퍼, 지 또는 판지의 제품/지와 판지,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제의 상자 · 포장대 및 기타 포장용기와 지와 판지 제의 서류상자 · 서류받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(사무실 · 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)/기타 포장대(콘을 포함한다)
20	630790	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, 세트, 사용하던 의류 · 사용하던 방직 용 섬유제품 및 넝마/기타의 제품(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)/기타/
21	640620	신발류 · 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/신발류 부분품[갑피(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를 포함한다], 갈아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, 각반 · 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/바깥바닥 및 뒷굽(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한다)/
22	640699	신발류 · 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/신발류 부분품[갑피(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를 포함한다], 갈아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, 각반 · 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/기타/기타 재료제의 것/
23	650590	모자 또는 그 부분품/모자[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과 원단상(스트립상의 것을 제외한다)의 레이스 · 웨스트 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에 한하며,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]와 각종 재료제의 헤어네트(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/기타/
24	650700	모자 또는 그 부분품/모자용의 밴드 · 내장재 · 커버 · 해트파운데이션 · 해트 프레임 · 챙 및 턱끈

25	660199	산류 · 지팡이 · 시트스틱 ·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/산류(지팡이 겸용 우산 · 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다)/기타/기타/
26	700991	유리와 유리제품/유리거울(백미러를 포함하며, 틀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/기타/틀이 붙지 아니한 것/
27	701590	유리와 유리제품/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, 안경용(시력교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의 유리(곡면의 것 · 구부린 것 · 중공의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,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유리와 그 세그먼트/기타/
28	711719	모조신변장식용품/비(卑)금속제의 것(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/기타
29	711790	모조신변장식용품/기타/
30	731700	철강의 제품/철강제의 못 · 압정 · 제도용 핀 · 파형 못 · 스테이플(제8305호의 것을 제외한다)과 이와 유사한 물품(두부가 기타 다른 재료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동을 재료로 한 것을 제외한다)/
31	731815	철강의 제품/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 · 너트 · 코치스크루 · 스크루훅 · 리벳 · 코터 · 코터핀 · 와셔(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) 및 이와 유사한 물품/나선가공한 제품/기타 스크루와 볼트(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/
32	731819	철강의 제품/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 · 너트 · 코치스크루 · 스크루훅 · 리벳 · 코터 · 코터핀 · 와셔(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) 및 이와 유사한 물품/나선 가공한 제품/기타/
33	732599	철강의 제품/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/기타/기타/
34	820551	비(卑)금속제의 공구 · 도구 · 칼붙이 · 스플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/수공구(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포함하며,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, 블로램프,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의 바이스 · 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, 앤벌, 가반식단야로,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그라인딩휠/기타 수공구(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)/가정용공구/
35	821300	가위 · 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
36	830210	비(卑)금속제의 각종 제품/비(卑)금속제의 장착구 ·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(가구 · 문 · 계단 · 창 · 차일구 · 마차 · 마구 · 트렁크 · 장 · 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), 비(卑)금속제의 모자걸이 ·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, 비(卑)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(卑)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/경첩
37	830590	비(卑)금속제의 각종 제품/비(卑)금속제의 서류철용 피팅 · 서신용 클립 · 레터 코너 · 서류용 클립 · 색인용 태그 및 이와 유사한 비(卑)금속제의 사무용품, 비(卑)금속제의 스트립상의 스테이플(예 : 사무실용 · 가구류용 · 포장용의 것에 한한다)/기타(부분품을 포함한다)/
38	845210	원자로 ·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/재봉기(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를 제외한다),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 · 밀판 · 덮개와 재봉기용 바늘/가정형의 재봉기/
39	848390	원자로 ·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/전동축(캡슐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)과 크랭크,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, 기어와 기어링, 볼 또는 롤러 스크루, 기어박스, 기타의 변속기(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),

		플라이휠과 폴리(폴리블록을 포함한다),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(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)/날이 붙은 휠, 체인스프로켓,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/
40	850110	전기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·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전동기와 발전기(발전세트를 제외한다)/전동기(출력이 37.5와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)/
41	851660	전기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·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,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,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(예 : 헤어드라이어 · 헤어컬러 · 컬링통히터), 손건조기, 전기다리미,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 및 전열용 저항체(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)/기타의 오븐, 쿠키 · 조리판 · 보일링링 · 그릴러와 로스터/
42	851690	전기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·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,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,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(예 : 헤어드라이어 · 헤어컬러 · 컬링통히터), 손건조기, 전기다리미,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 및 전열용 저항체(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)/부분품/
43	851890	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, 확성기(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, 헤드폰과 이어폰(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,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,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/부분품
44	851981	자기식 · 광학식 또는 기타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
45	852190	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(비디오투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/기타
46	852290	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/기타
47	852329	전기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·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디스크 · 테이프 ·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· 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(기록 여부를 불문하고,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,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)/자기식 매체/기타/
48	852380	전기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·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디스크 · 테이프 ·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· 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(기록 여부를 불문하고,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,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)/기타/
49	852713	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(외부전원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)/기타의 기기(음성기록기 또는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에 한한다)
50	852721	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(자동차용으로서 외부전원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)/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
51	852849	기타 음극선관 모니터
52	852859	기타 모니터

53	852869	전기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·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(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· 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/프로젝터/기타
54	852871	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(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, 음성기록 또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/영상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지 아니한 것
55	852872	전기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·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(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· 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/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(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, 음성기록 또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/기타(천연색의 것에 한한다)/
56	853670	전기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·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전기회로의 개폐용 · 보호용 · 접속용 기기(예: 개폐기 · 계전기 · 퓨즈 · 서지억제기 · 플러그 · 소켓 · 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 · 접속함)(전압이 1,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)와 광섬유 · 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/광섬유 · 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/
57	853921	전기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·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(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)와 아크램프/기타의 필라멘트 램프(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제외한다)/텅스텐 할로겐의 것
58	853931	전기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·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(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)와 아크램프/방전램프(자외선램프를 제외한다)/형광램프(열음극형의 것에 한한다)
59	853939	전기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·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(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)와 아크램프/방전램프(자외선램프를 제외한다)/기타
60	853990	전기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·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(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)와 아크램프/부분품/
61	854011	텔레비전용 음극선관(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)/천연색의 것/
62	854071	자전관
63	854091	전기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·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열전자관 ·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(예 : 진공관 · 증기 또는 가스를 봉입한 관 · 수은아크정류관 · 음극선관 · 텔레비전용 콜상관)/부분품/음극선관의 것/
64	854430	전기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·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절연(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

		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)전선 · 케이블(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)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(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), 광섬유 케이블(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,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)/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(자동차 · 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것에 한한다)
65	854720	전기기기와 그 부분품,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·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(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,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) 및 비(卑)금속제의 전기기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(절연재료로 속을 맨 것에 한한다)/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
66	854890	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,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,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(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/기타
67	880400	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/낙하산(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)과 로토슈트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
68	900190	광학기기 · 사진용기기 · 영화용기기 · 측정기기 · 검사기기 ·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광섬유와 광섬유다발,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, 편광재료제의 판, 각종 재료제의 렌즈(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), 프리즘 · 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(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)/기타/
69	900211	광학기기 · 사진용기기 · 영화용기기 · 측정기기 · 검사기기 ·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각종 재료제의 렌즈 · 프리즘 · 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(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,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)/대물렌즈/카메라용 · 영사기용 · 사진 확대기 또는 사진축소기용의 것/
70	900490	광학기기 · 사진용기기 · 영화용기기 · 측정기기 · 검사기기 ·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시력교정용 · 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 · 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/기타/
71	900652	광학기기 · 사진용기기 · 영화용기기 · 측정기기 · 검사기기 ·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사진기(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),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/기타의 사진기/기타(폭이 35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한다)/
72	900659	광학기기 · 사진용기기 · 영화용기기 · 측정기기 · 검사기기 ·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사진기(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),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/기타의 사진기/기타/
73	910111	팔목시계(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, 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)/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
74	910129	기타의 팔목시계(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/기타
75	910211	시계와 그 부분품/팔목시계 · 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(스톱워치를 포함하여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)/팔목시계(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, 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/기계식 표시부 만을 갖춘 것/
76	910219	팔목시계(전기구동식의 것에 한하며, 스톱워치의 기능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/기타

77	910400	차량용·항공기용·우주선용 또는 선박용의 계기판 클록 및 이와 유사한 클록
78	910521	벽 시계/전기구동식의 것/
79	910819	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(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)/전기구동식의 것/기타
80	910919	클록무브먼트(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에 한한다)/전기구동식의 것/기타/
81	911011	완전한 무브먼트(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에 한한다)(무브먼트세트)/
82	911120	시계와 그 부분품/휴대용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/비(卑)금속제의 케이스(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)/
83	911190	휴대용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/부분품
84	911290	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/부분품
85	911320	시계와 그 부분품/휴대용 시계줄·휴대용시계밴드 및 휴대용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/비(卑)금속제의 것(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)/
86	911390	휴대용시계줄·휴대용시계밴드 및 휴대용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/기타
87	911430	시계와 그 부분품/기타 시계의 부분품/문자판/
88	911490	기타 시계의 부분품/기타/
89	940130	가구와 침구·매트리스·매트리스 서포트·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,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, 램프와 조명용 사인·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/의자(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)와 그 부분품/회전의자(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)/
90	940169	가구와 침구·매트리스·매트리스 서포트·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,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, 램프와 조명용 사인·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/의자(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)와 그 부분품/기타의 의자(프레임이 목제인 것에 한한다)/기타/
91	940180	가구와 침구·매트리스·매트리스 서포트·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,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, 램프와 조명용 사인·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/의자(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)와 그 부분품/기타의 의자/
92	940310	가구와 침구·매트리스·매트리스 서포트·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,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, 램프와 조명용 사인·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/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/사무실용 금속제가구/
93	940320	가구와 침구·매트리스·매트리스 서포트·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,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, 램프와 조명용 사인·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/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/기타의 금속제가구/
94	940490	가구와 침구·매트리스·매트리스 서포트·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,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, 램프와 조명용 사인·조명용 네임플레이트

		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/매트리스 서포트,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(예 : 매트리스 · 이불 · 우모이불 · 쿠션 · 푸우프 · 베개)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라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(피복 여부를 불문한다)/기타/
95	940510	가구와 침구 · 매트리스 · 매트리스 서포트 ·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,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, 램프와 조명용 사인 ·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/램프와 조명기구(서치라이트 · 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,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, 조명용 사인 ·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(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) 및 그 부분품(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/산데리아와 기타의 천장용 · 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(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)/
96	940591	가구와 침구 · 매트리스 · 매트리스 서포트 ·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,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, 램프와 조명용 사인 ·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/램프와 조명기구(서치라이트 · 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,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, 조명용 사인 ·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(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) 및 그 부분품(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/부분품/유리제의 것/
97	940599	가구와 침구 · 매트리스 · 매트리스 서포트 ·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,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, 램프와 조명용 사인 ·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/램프와 조명기구(서치라이트 · 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,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, 조명용 사인 ·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(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) 및 그 부분품(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/부분품/기타/
98	950300	완구 · 유희용구 · 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/세발자전거 · 스쿠터 · 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, 인형용의 차, 인형 및 기타 완구,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/
99	950430	유희용구 · 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(핀테이블용구 · 당구용구 · 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)/기타의 게임용구(코인 · 은행권 · 은행카드 · 토큰 및 기타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볼링 유희장 용구는 제외한다)
100	961610	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,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/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